



제30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10. 21.

**복지환경위원회**

전문위원 서용관

#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1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 개정

## 3. 주요내용

-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한도 증액(500만원→1,000만원)
- 별지 서식 현행화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관련부서 : 환경정책과
- 라. 입법예고 : 2024. 8. 29. ~ 2024. 9. 19.(21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 개정(2023. 08. 29.) 사항을 반영하여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한도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 한 사항임

- 기금의 총액 변동 없이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최고배분액의 한도만 높이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  
- 다만 “한강수계법”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에 따라 지원되고 있기에 현행 조례 제8조(사업비 지원)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## ☑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

제17조(직접지원사업비집행) ① 관리청은 매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접지원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·확정하고 그 결과를 3월3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청은 매년 직접지원대상자 자격 기준을 관리청 홈페이지 및 주민지원 사업추진 위원회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관리청은 직접지원대상자로부터 [별지 제6호 서식]의 직접지원사업비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확인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지원 적격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직접지원대상자 유형,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여건,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호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주민등록표 등(초)본

2. 부동산 등기부등본(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이 없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본)

3.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해당 마을 이·통장 확인서 등)

4. 가족관계증명서

5. 과세정보 관련 서류

④ 관리청 또는 읍·면·동은 제3항에 따라 직접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 규모를 산정하고,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5조제3항에 따른 대토자의 경우 매각전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.

⑤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배분은 [별표7] 내지 [별표7의2]에 따라 해당 지역별 직접지원사업비의 70%는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30%는 재산규모를 반영한 등급 구분에 따라 차등배분하되,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지원액은 1,00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. 다만,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최고 배분액(1등급)이 100만원 이하인 관리청 또는 읍·면·동은 차등배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관리청 또는 읍·면·동은 제5항에 따른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배분액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20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확정된 배분액은 변경할 수 없다.

- ⑦ 직접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가 발급받은 전용카드로 집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[별표8]에 따른 사용제한 업종에는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⑧ 직접지원대상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이경우에도 제7항에 따른 제한된 용도에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⑨ 관리청은 직접지원 전용카드를 통해 직접지원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지원 대상자에게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고, 전용카드 연계계좌에 사업비를 이체 후 전용카드보조금관리시스템(<http://poss.bccard.com>)에서 집행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⑩ 직접지원대상자는 전용카드 연계계좌에 입금된 직접지원사업비를 출금할 수 없다.
- ⑪ 직접지원대상자가 당해 사업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시까지 지출사항과 장례 절차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되, 제7항에 따른 제한된 용도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법정상속인 중 [별지 제6의2호 서식]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1인(이하 “수임인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수임인은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당해연도 내에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⑫ 관리청은 매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직접지원대상자의 전용카드 연계계좌에 남아 있는 천원 이상 미사용액에 대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되, 미정산 금액은 다음 연도 직접지원사업비 집행 시 차감·반영하여야 한다. 단, 이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제한된 용도로는 사업비를 정산하지 아니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8조(사업비 지원) ② 읍·면장은 직접지원사업비의 70퍼센트는 주민지원 대상자들에게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주민지원대상자들의 재산 규모를 반영한 등급 구분에 따라 차등배분하되,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원액은 **500만원(⇒1,000만원)** 이내로 한정한다. 다만, 대상자별 직접지원 사업비 최고 배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등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세입과 세출 금액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
  -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,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(조안면, 화도읍)
  - 매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면적, 주민 수 등을 근거로 기금을 정해주고 있으며, 정해진 기금 안에서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함
    - 예산 편성내역 : (22년) 2,385,084천원 / (23년) 2,315,742천원 / (24년) 2,202,611천원
  - 금번 조례개정은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이 개정됨에 수반되는 조례개정이며 배부되는 기금의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. **정해진 기금 안에서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최고 배분액의 한도만 높이는 것임**
    - 2024년 기준으로 배분액을 계산해보았을 때, 대상자 총 531가구(조안 481, 화도 50) 중 500만원 이상 지급받게 되는 자는 95명(조안)으로 93명은 506만원, 2명은 522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됨

### 4. 작성자

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경선